

8. 강사료 지급규정

제정일 : 1997년 4월 20일

개정일 : 2013년 2월 5일

- 제1조(강의의 구분과 정의)** ① 국내외의 저명 인사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.
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이외의 강의를 초과강의라 한다.
③ 강사의 시간제 담당수업을 시간 강의라 한다.

- 제2조(강사료의 지급)** ① 시간강사료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.
② 초과강사료는 실제 초과 강의한 시간수에 의하여 지급한다.
③ 특별강의료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사장이나 총장이 정하여 경우에 따라 지급한다.

- 제3조(강사료 지급액)** ①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 교직원에 대해서는 초과강사료를 제외하고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② 강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따로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4조(외국인 교수 초빙 강의료)** ① 외국인교수로서 초빙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는 강사에 게는 급여 규정에 준한 해당 급여를 강사료로 지급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강사료는 이사장이 정한다.

제5조(강사료의 지급기일)

강사료는 비고정강의자를 제외하고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